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56
----------	-----

2023. 7. 21.(금)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김현문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23년 7월 4일

다. 회부일자: 2023년 7월 5일

라. 상정일자: 2023년 7월 13일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현문 의원)

가. 제안이유

○ 창의적 사고력 개발 등 교육적 효과 향상에 필수요소인 학교 독서교육과 연계한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글쓰기 및 토론 관련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학교장이 각 학교에서 글쓰기 및 토론 관련 교육활동에 대해 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안 제6조의2)
- 제명과 조문에 포함된 용어가 일치되도록 수정 (안 제5조, 제11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8조제3항)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영균)

가. 조례 개정 이유

-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¹⁾에서 강조하고 있는 학교 독서 진흥의 교육적 효과인 읽기, 쓰기, 말하기 등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충청북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학교장이 각 학교에서 글쓰기 및 토론 관련 교육활동을 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요 개정 목적이 있음.
- 다양한 가치관의 혼재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깊이 있게 사고하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의 중요한 방법으로 미국 하버드대²⁾ 등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학생들에게 글쓰기 강의를 강조하고 있음.

1) 제10조(학교의 독서 진흥) ①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모든 국민이 독서 문화 진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교육 과정의 전체를 통하여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등의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하버드대는 1872년부터 신입생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150년 가까이 수업 내용을 업그레이드하여 ‘논증적 글쓰기’라는 과목명으로 전문적인 글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에듀프레스 / 2021.4.16.]

- 충청북도교육청에서도 *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을 비롯해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 기본계획(2019~2023)」(교육부, 2019. 3월),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9~2023)」(문화체육관광부, 2019. 4월), 제18대 충청북도교육감 공약 (2-1-1. 전인적 인성교육 운영)에 따라 ‘2023. 독서·인문소양교육 기본 계획’에 교육청 수준의 학교 독서 활동 관련 지원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음.

*

총론(교육청 수준의 지원) : 인문학적 소양 및 통합적인 읽기 능력 함양을 위해 독서활동을 활성화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한다.

- 특히, 지난 해 확정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국어과에 ‘자기주도성, 창의력 향상’ 강화에 중점을 두고 ‘독서와 작문’ ‘독서토론과 글쓰기’ 등 과목을 신설할 계획임.

〈 2022 개정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교과목 구성 〉

교과(군)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국어	공통국어1 공통국어2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주제 탐구 독서, 문학과 영상, 직무 의사소통	독서 토론과 글쓰기, 매체 의사소통, 언어생활 탐구

- 이에 따라, 도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학교 독서활동과 연계한 언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글쓰기와 토론 관련 교육활동을 지도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본 조례의 개정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나. 주요내용

- 본 개정안에서 신설한 **안 제6조의2(글쓰기 등) 제1항**에는 교육감의 책무로 학교 독서교육과 연계한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언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 **제2항**에서는 학교장이 각 학교에서 독서교육과 연계한 글쓰기 및 토론 활성화를 위한 교육활동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특히, 학교 교육과정 중 이뤄지는 토론교육의 활성화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주입식 교육’의 단점을 극복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나누며 역동적으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게 됨. 이를 통해,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공감 능력을 제고하는 등 언어 능력 향상과 함께 다양하고 바람직한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은 독서토론 프로그램으로 ‘2023. 독서·인문소양교육 기본계획’ 안에 포함하여 <충북 청소년 비경쟁 독서토론 한마당>¹⁾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조문 신설을 통해 각 학교에서 글쓰기 및 토론 관련 교육활동을 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학교 상황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1) (현재 충북교육도서관 운영)

▷ 대상: 독서토론 동아리 초등 25교 100명, 중고 34교 102명 총 202명

▷ 운영: 2023.11.3.~4.(초등부와 중고등부 2일간 나누어 실시)

▷ 방식: 주제도서 읽은 후 질문 만들고 함께 토론하기, 저자와 만남 후 소감 나누기

- 이밖에 안 제5조(독서교육 전담부서)에서는 조문 내에서 ‘전담 조직을’로 표현된 부분을 제명과 동일하게 ‘전담부서를’로 수정 하였으며,
- 안 제11조(행정적·재정적 조치)는 기존 조례에서 제명에는 ‘행정상·재정상의 조치’로 표현한 반면, 조문에는 ‘행·재정의 지원과 지도 등 필요한 조치’로 사용하고 있어, 제명과 조문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조치’로 표현되는 용어가 일치되도록 수정 하였음.
- 안 제8조제3항에서는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이라는 조문 내용 가운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¹⁾에 따라 일본어식 표현인 ‘~관하여’를 삭제해, ‘장학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으로 정비하였음.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학교에서 독서교육과 연계해 학생들의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글쓰기 및 토론 관련 교육활동 지도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특히,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국어 교육과정에 ‘자기주도성, 창의력 향상’ 강화에 중점을 두고 ‘독서토론과 글쓰기’

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10판, 2021.12.) 제3장(문장편 / 일본어 투 표현의 정비. p179)

: ‘~에 관하여’는 일본어를 직역하면서 생긴 표현이다. 문맥에 따라 ‘~에 관하여’를 삭제하거나 ‘~는’, ‘~를’, ‘~에’ 등으로 바꾸어 쓴다.

등의 과목을 신설하는 등 향후 학교에서의 글쓰기 및 토론 관련 교육활동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조례안의 개정 방향 또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개정안의 조문 체계와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전담 조직을”을 “전담부서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글쓰기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독서교육과 연계하여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말하기 능력 등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독후감, 일기 등과 같은 글쓰기 지도를 비롯해 토론동아리 활동 등 토론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활동 지도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제3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행정상·재정상의 조치)”를 “(행정적·재정적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중 “행·재정의”를 “행정적·재정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독서교육 전담부서) 교육감은 독서교육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u>전담 조직을</u> 둘 수 있다. <u><신 설></u>	제5조(독서교육 전담부서) ----- ----- <u>전담부서를</u> -----.
	제6조의2(글쓰기 등) ① 교육감은 <u>학교 독서교육과 연계하여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말하기 능력 등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② <u>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독후감, 일기 등과 같은 글쓰기 지도를 비롯해 토론동아리 활동 등 토론 활성화를 위한 교육활동 지도 및 지원을 할 수 있다.</u>
제8조(독서 행사)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독서 행사, 포상·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u>관하여 필요한 사항</u> 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독서 행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필요한</u> ----- -----.
제11조(<u>행정상·재정상의 조치</u>)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한 사	제11조(<u>행정적·재정적 조치</u>) -- ----- -----

업 추진에 필요한 <u>행·재정의</u> 지원과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u>행정적·재정적</u> ----- -----.
---	------------------------------------

관 계 법 령

□ 독서문화진흥법

[시행 2023. 5. 4.] [법률 제18857호, 2022. 5. 3., 전부개정]

- 제10조(학교의 독서 진흥)** ①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모든 국민이 독서 문화 진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교육 과정의 전체를 통하여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등의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학교의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도서관의 신설·확충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독서 자료의 확보와 독서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독서 교육 관련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 모임의 운영 장려, 학교 도서관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독서 활동이 학교 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사서교사나 독서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 학교도서관진흥법 (약칭: 학교도서관법)

[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타법개정]

- 제15조(독서교육 등)** ① 교육부장관·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른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 3. 28.] [대통령령 제33343호, 2023. 3. 28., 일부개정]

- 제9조(독서교육 등)** 교육부장관·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상황
2. 학생들의 독서수준
3. 그 밖에 학생들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조례안에 따라 실시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안은 주요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비용의 추계가 곤란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